

#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

## ● 사업목적

보증·담보 여력이 없는 노동자 등에게 **신용보증지원**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**생계를 보호**

## ● 사업내용

### 지원대상

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보증대상 용자사업\*의 용자 대상으로 선정된 자 중 신용보증 신청자

\* (근복)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, (고보) 직업훈련생계비대부, (산재) 산재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

### < 신용보증지원 제외 대상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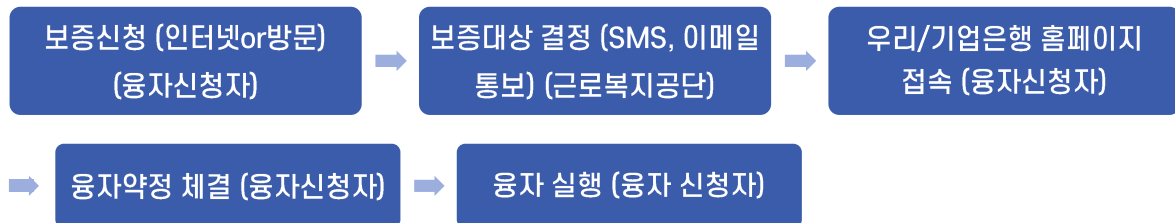
-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「국세징수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
-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,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
- 외국인,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)

### 지원내용

각 용자사업 한도액으로 지원하되, 1인당 최대 **2,000만원** 보증지원

\* 용자 대상자에게 사업별 연 0.7~1.0% 보증료 징수(융자금 지급 시 선공제)

## ● 사업추진체계



## ● 지원문의

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: 1588-0075

-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: [www.workdream.net](http://www.workdream.net)